

의안번호	제881호
의결 연월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김국기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3월 4일

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국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8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4일

발의자 : 김국기, 최정훈, 안지윤,
박재주, 안치영, 오영탁,
조성태

1. 개정이유

-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이고,
- 지속가능한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2조에서 제1호로 구분되어 있던 조문을 정비(안 제2조)
-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(안 제3조)
- 육성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변경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
- 나. 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
- 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관광상품”이란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 및 제작되는 공예품, 토산품, 특산품, 민예품, 농·수·축·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인정하는 제품 등을 말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를 “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육성계획”을 “중장기 육성계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<u>“관광상품”이란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 및 제작되는 공예품, 토산품, 특산품, 민예품, 농·수·축·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.</u></p>	<p><u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관광상품”이란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 및 제작되는 공예품, 토산품, 특산품, 민예품, 농·수·축·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인정하는 제품 등을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시책과 사업)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관광상품 육성 및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u></p> <p>1. 관광상품 개발 및 <u>육성계획 수립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3조(시책과 사업) <u>도지사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 <u>중장기 육성계획</u> -----</p> <p>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관광진흥법[법률 제20357호, 2024. 2. 27.]

- 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, 관광 홍보물의 제작,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 제1항에 따라 관광지·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·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(屋外廣告物)을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.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 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 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
 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 5.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 6.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(비용추계서 작성 대상)제1호

○ 사 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구조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조문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